

변경대비표(일반및자펀드)

1. 대상 펀드:

no.	펀드명	명칭 비교 지수	모펀드 명칭 비교 지수	종류 명칭 변경	투자 대상 자산 추가	모펀드 투자 대상 자산	환매 수수료 삭제	결산 및 주요 수치	변 동 성	변경 사항
1	미래에셋 5 대그룹대표주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○	○	-	○	주 1)	○	○	○	9), 10), 11)
2	미래에셋 5 대그룹대표주증권투자신탁 2 호(주식)	○	○	-	-	주 1)	-	-	-	-
3	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 2030 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○	○	주 3)	○	○	○	11)
4	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 3040 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-	-	○	○	주 3)	○	○	○	9), 10), 11)
5	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 4050 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-	-	○	○	주 3)	○	○	○	9), 10), 11)
6	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 5060 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○	○	주 3)	○	○	○	9), 10), 11)
7	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 2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-	-	주 2)	-	-	-	11)
8	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 4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-	-	주 2)	-	-	-	11)
9	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연금저축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-	○	주 2)	-	-	-	9), 10), 11)
10	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-	○	주 2)	-	-	-	11)
11	미래에셋개인연금가치주포커스 20 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-	-	주 2)	-	-	-	-
12	미래에셋개인연금가치주포커스 40 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-	-	주 2)	-	-	-	-
13	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-	-	-	○	주 3)	-	-	-	9), 10), 11)
14	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 2030 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-	○	주 3)	-	○	○	9), 10), 11)
15	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 3040 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-	-	-	○	주 3)	-	○	○	9), 10), 11)
16	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 4050 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-	-	-	○	주 3)	-	○	○	9), 10), 11)
17	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 5060 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-	○	주 3)	-	○	○	11)
18	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 6070 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-	-	주 3)	-	-	-	11)

19	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 7090 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채권)	-	-	-	○	주 3)	-	○	○	11)
20	미래에셋마에스트로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)	-	-	-	○	주 3)	-	-	-	11)
21	미래에셋목돈관리목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 4 호(채권)	-	-	-	○	주 3)	○	○	○	9), 10), 11)
22	미래에셋목돈관리목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 5 호(채권)	-	-	-	○	주 3)	○	○	○	9), 10), 11)
23	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가치주포커스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-	○	주 2)	-	-	-	11)
24	미래에셋장기주택마련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-	○	주 3)	○	○	○	9), 10), 11)
25	미래에셋퇴직연금가치주포커스 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-	-	주 2)	-	-	-	-
26	미래에셋퇴직연금가치주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-	○	주 2)	-	-	-	9), 10), 11)
27	미래에셋변액보험채권증권투자신탁(채권)	-	-	-	-	-	-	○	-	-
28	미래에셋퇴직플랜차이나인덱스 40 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	-	-	-	-	-	-	○	-	-

2. 변경 사항:

- 1) 투자신탁 명칭 및 비교지수 변경
- 2) 모투자신탁 명칭 및 비교지수 변경
- 3) 투자신탁 클래스 명칭 변경
- 4) 투자대상자산 추가
- 5)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추가
- 6) 환매수수료 삭제
- 7)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- 8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
- 9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- 10) 법 개정사항 반영
- 11) 이해관계인 삭제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명 변경

3. 효력발생예정일: 2023년 3월 17일 (금)

4. 변경 내용:

- 1) 투자신탁 명칭 및 비교지수 변경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투자신탁 명칭>	- 미래에셋 <u>5 대그룹대표주</u>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 - 미래에셋 <u>5 대그룹대표주</u> 증권자투자신탁 2 호(주식)	- 미래에셋 <u>대형주포커스</u>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 - 미래에셋 <u>대형주포커스</u> 증권자투자신탁 2 호(주식)
<비교지수>	<u>MKF Customized 5 대그룹주</u> 지수	<u>KOSPI</u>

2) 모투자신탁 명칭 및 비교지수 변경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투자신탁 명칭>	미래에셋 <u>5 대그룹대표주</u> 증권모투자신탁 (주식)	미래에셋 <u>대형주포커스</u> 증권모투자신탁(주식)
<비교지수>	<u>MKF Customized 5 대그룹주 지수</u>	<u>KOSPI</u>

3) 투자신탁 클래스 명칭 변경

변경 전	변경 후
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 2030 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 (주식) <u>C-P</u>	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 (주식) <u>C-Y</u>
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 3040 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 (주식혼합) <u>C-P</u>	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30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 (주식혼합) <u>C-Y</u>
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 4050 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 (주식혼합) <u>C-P</u>	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405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 (주식혼합) <u>C-Y</u>
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 5060 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 (채권혼합) <u>C-P</u>	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506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 (채권혼합) <u>C-Y</u>

4) 투자대상자산 추가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15 조(투자대상자산 등)	<p>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</p> <p>1. ~2. <생략></p> <p><u>3. <신설></u></p>	<p>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</p> <p>1. ~2. <생략></p> <p><u>3. 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.)</u></p>
	<p>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</p> <p>1. ~2. <생략></p> <p><u>3. <신설></u></p> <p>4. 제 1 호 <u>및 제 2 호</u>에 준하는 외화표시 자산</p>	<p>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</p> <p>1. ~2. <생략></p> <p><u>3. 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.)</u></p> <p>4. 제1호 <u>내지 제3호</u>에 준하는 외화표시 자산</p>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8. 가. 투자대상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설> <생략> <신설>	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환매조건부매수 <생략> 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
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설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] <생략> <신설>	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환매조건부매수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] <생략> 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

5)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추가

주1)

미래에셋5대그룹대표주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	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[제2부 별첨1] 모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 1. 나. (1) 투자대상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설> <생략> <신설>	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환매조건부매수 <생략> 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

주2)

미래에셋가치주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	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[제2부 별첨1] 모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 1. 나. (1) 투자대상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설> <생략> <신설>	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환매조건부매수 <생략> 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

주3)

미래에셋마에스트로증권모투자신탁(채권)		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
<p>[제2부 별첨1] 모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 1. 나. (1) 투자대상</p>	<p>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설> <생략> <신설></p>	<p>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환매조건부매수 <생략> 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 을 말함.</p>
---	---	---

6) 환매수수료 삭제

- 미래에셋5대그룹대표주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p>제39조(환매수수료)</p>	<p>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</p> <p>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'이익금'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p> <p>1. 종류A 수익증권 30일 미만: 이익금의 70% 30일 이상 90일 미만: 이익금의 30%</p> <p>2. 종류AG 수익증권 9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p> <p>3. 종류C1 수익증권 9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p> <p>4. 종류C2 수익증권 9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p> <p>5. 종류C3 수익증권 9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p> <p>6. 종류C4 수익증권 9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p> <p>7. 종류C5 수익증권 9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p> <p>8. 종류CG 수익증권</p>	<p>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p>

	<u>9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u> <u>9. 종류C-I 수익증권</u> <u>9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u> <u>10. 종류직판F 수익증권</u> <u>9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u> <u>11. 종류S 수익증권</u> <u>9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u>	
--	--	--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환매수수료>	<u>[A] 3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u> <u>30일 이상 90일 미만: 이익금의 30%</u> <u>[AG, C1, C2, C3, C4, C5, CG, C-I, 직판F, S] 9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u>	환매수수료 없음

-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주식)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39조(환매수수료)	<p>① <u>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 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</u></p> <p>② <u>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'이익금'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u></p> <p><u>1. 종류A 수익증권</u> <u>30일미만 이익금의 70%</u> <u>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%</u></p> <p><u>2. 종류C1 수익증권</u> <u>9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u></p> <p><u>3. 종류C-P 수익증권</u> <u>9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u></p> <p><u>4. 종류C-I 수익증권</u> <u>9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u></p>	<p><u>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u></p>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환매수수료>	[A] 30 일미만 이익금의 70% 30 일 이상 90 일 미만 이익금의 30% [C1, C-P, C-I] 90 일 미만: 이익금의 70%	환매수수료 없음

-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30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39조(환매수수료)	<p>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 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</p> <p>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'이익금'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p> <p>1. 종류A 수익증권 30일미만 이익금의 70%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%</p> <p>2. 종류C1 수익증권 9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p> <p>3. 종류C-P 수익증권 9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p> <p>4. 종류C-I 수익증권 9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p>	<p>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p>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환매수수료>	[A] 30 일미만 이익금의 70% 30 일 이상 90 일 미만 이익금의 30% [C1, C-P, C-I] 90 일 미만: 이익금의 70%	환매수수료 없음

-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405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

[집합투자계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39조(환매수수료)	<p>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 (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 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</p> <p>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'이익금'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p> <p>1. 종류A 수익증권 30일미만 이익금의 70%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%</p> <p>2. 종류C1 수익증권 9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p> <p>3. 종류C-P 수익증권 9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p> <p>4. 종류C-I 수익증권 9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p>	<p>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p>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환매수수료>	<p>[A] 30 일미만 이익금의 70% 30 일 이상 90 일 미만 이익금의 30% [C1, C-P, C-I] 90 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p>	<p>환매수수료 없음</p>

-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506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
[집합투자계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----	------	------

제39조(환매수수료)	<p>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 <u>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</u></p> <p>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'이익금'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<u>부과한다.</u></p> <p>1. 종류A 수익증권 30일미만 이익금의 70%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%</p> <p>2. 종류C1 수익증권 9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p> <p>3. 종류C-P 수익증권 9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p> <p>4. 종류C-I 수익증권 9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p>	<p><u>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u></p>
-------------	--	--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환매수수료>	<p>[A] 30 일미만 이익금의 70% 30 일 이상 90 일 미만 이익금의 30% [C1, C-P, C-I] 90 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p>	<p><u>환매수수료 없음</u></p>

- 미래에셋목돈관리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4호(채권)

[집합투자계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39조(환매수수료)	<p>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</p>	<p><u>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u></p>

	<p><u>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</u></p> <p>② <u>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'이익금'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u></p> <p>1. <u>종류A 수익증권</u> <u>30일미만:이익금의 70%</u> <u>30일이상90일미만:이익금의 30%</u></p> <p>2. <u>종류A-e 수익증권</u> <u>30일미만:이익금의 70%</u> <u>30일이상90일미만:이익금의 30%</u></p> <p>3. <u>종류C 수익증권</u> <u>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u></p>	
--	--	--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환매수수료>	[A , A-e] 30일 미만: 이익금의 70% 30일 이상 90일 미만: 이익금의 30% [C] 90 일 미만: 이익금의 70%	환매수수료 없음

- 미래에셋목돈관리 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5호(채권)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39조(환매수수료)	<p>① <u>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</u></p> <p>② <u>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'이익금'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u></p> <p>1. <u>종류A 수익증권</u></p>	<p><u>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u></p>

	<u>30일미만:이익금의 70%</u> <u>30일이상90일미만:이익금의 30%</u> 2. 종류A-e 수익증권 <u>30일미만:이익금의 70%</u> <u>30일이상90일미만:이익금의 30%</u> 3. 종류C 수익증권 <u>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u>	
--	--	--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환매수수료>	<u>[A , A-e] 3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u> <u>30일 이상 90일 미만: 이익금의 30%</u> <u>[C] 90 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u>	환매수수료 없음

- 미래에셋장기주택마련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39조(환매수수료)	<p>① <u>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</u></p> <p>② <u>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'이익금'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u></p> <p>1. 종류C1 수익증권 <u>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u></p> <p>2. 종류C2 수익증권 <u>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u></p> <p>3. 종류C3 수익증권 <u>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u></p> <p>4. 종류C4 수익증권 <u>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u></p> <p>5. 종류C5 수익증권 <u>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u></p>	<p><u>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u></p>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한매수수료>	[C1, C2, C3, C4, C5] 90 일미만: 이익금의 70%	한매수수료 없음

7)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요약정보<투자비용>	-	총보수·비용(피투자집합투자 기구 보수포함) 업데이트
제 2 부.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-	총보수·비용(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포 함) 및 증권거래비용 등 업데이트
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 실적 등에 관한 사항	-	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제 5 부. 4. 가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	-	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업데이트

8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

펀드명	변경 전 등급	변경 후 등급	변경 전(%)	변경 후(%)
미래에셋5대그룹대표주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1	2	24.6	23.49
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주식)	2	2	22.55	21.4
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주식)	2	2	22.55	21.41
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3040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	3	3	14.85	14.33
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3040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	3	3	14.88	14.36
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4050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	3	3	11.82	11.59
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4050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	3	3	11.85	11.61
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5060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4	4	6.61	6.98
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5060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4	4	6.64	7
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7090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채권)	5	5	2.77	3.97
미래에셋목돈관리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4호(채권)	5	5	2.76	3.91
미래에셋목돈관리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5호(채권)	5	5	2.81	4.08
미래에셋장기주택마련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2	2	21.94	21.05

9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조(용어의 정의)	<신설>	- “고난도금융투자상품”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의한 금융투자상 품을 말한다.

제53조(고난도금융투자상품)	<신설>	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-----------------	------	---

10) 법 개정사항 반영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13조(자산운용지시 등)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<u>투자신탁재산으로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 조제 1 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<u>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15조(투자대상자산 등)	-채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<u>또는</u> <생략> -자산유동화증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<u>또는</u> <생략>	<삭제>
제17조(운용 및 투자 제한)	2. <생략> 나.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</u> <u>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<생략></u>	2. <생략> 나. <삭제>
제42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	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. ②~③ <생략> <신설>	①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②~③ <생략> 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<u>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</u>

		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-	--	---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. 8. 가. 투자대상	-채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<u>또는</u> <생략> -자산유동화증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<u>또는</u> <생략>	<삭제>
제2부 8. 나. 투자제한	-동일종목투자 (예외)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 나.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<u>또는</u>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</u> <u>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</u> , <생략>	-동일종목투자 (예외)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 나. <삭제>

11) 이해관계인 삭제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명 변경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4부. 1. 가. 회사의 개요	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 - <u>일반사무관리회사</u> : <u>미래에셋펀드서비스</u> - 신탁업자 : 국민은행	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 <삭제>
제4부. 4.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	회사명: <u>미래에셋펀드서비스(주)</u>	회사명: <u>한국펀드파트너스(주)</u>

*상기 변경사항에 대한 집합투자계약 및 정관 조항 번호는 펀드 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, 변경 내용은 동일함

미래에셋자산운용(주)